
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1 . 16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11 . 25 .

다. 상정일자 : 1998.11.25 제62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 제1차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우수한 평창군 관내 출신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내 용

가. 장학기금설치 목적 및 기금의 조성방법

나. 기금관리는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탁·관리

다.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평창장학회에 위탁하여 처리

라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평창장학회 정관 및 지급규정 적용

4. 검토 내용

- 가.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
- 나. 1996년도 조례에 근거없이 5,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하고 '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에 5,000만원을 편성하여 출연하려다 '97.4.25 조례에 근거없이 예산편성하여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있음.
- 다. 또한 '97.11.14일 조례안이 평창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'98.12.15 평창군 제53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에 상정하였으나 의원7명이 전원 보류로 찬성하여 제2대 의회 임기종료와 동시 자동폐기된 조례안임.
- 라. 금회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9년도 일반회계에 출연금 5,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, '98.10. 1일 축협에 예치된 기금을 평창군 금고로 이전한 사실이 있음.
- 마. 기타 자구 및 내용에는 별문제점이 없음.